

부록 3> 일본의 지역차등화 지원 정책

(1) 근거법

공업재배치법(1972)

(2) 목 적

공업집적이 과도한 지역에서 공업집적도가 낮은 지역으로의 공장이전, 해당 지역의 공장 신증설 환경정비, 기타 환경보전 및 고용안정 등을 도모함으로써 공업재배치를 촉진하고,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,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과 국민복지향상을 꾀함.

(3) 지역구분

1) 이전촉진지역 : 대도시 및 그 주변 지역 가운데 공업집적도가 두드러지게 높아 당해 지역외로 공장이전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政令에서 정한 지역

2) 유도지역

① 道縣단위의 유도지역 : 공업집적도가 낮고, 인구증가율도 낮은 道

縣으로 政令에서 정한 구역. 다만 인구, 공업집적도, 인구증가율 등으로 볼 때 일정기준 이상의 市町村 구역은 제외함.

② 市町村단위의 유도지역 : ①의 구역과 연접해 있고, 공업집적도 및 인구증가율이 ①의 구역에서의 공업집적도 및 인구증가율과 유사한 市政村으로 政令에서 정한 지역.

3) 특별유도지역 : 유도지역 중 특히 공업집적도가 낮은 홋카이도, 오키나와 등 12개 道縣 및 구조적으로 쇠퇴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섬유단지, 광산지역 및 電源(원자력 및 석탄화력발전소)소재 市町村 및 그와 인접한 市町村

4) 백지지역 : 위 지역을 제외한 지역

(4) 관련 우대조치

1) 세제지원

(가) 對 기업

① 국세 : 특정자산의 환매에 따른 과세특례(조세특별조치법)

○ 다음의 구역에 대해서는 1980년 4월 1일부터 2001년 3월 31일까지